

한국체육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규정

제정 2003. 5. 1. (규칙 제395호)

개정 2006. 7. 31. (규칙 제480호)

2012. 3. 28. (규칙 제596호)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23조에 규정된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육과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3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교학처장, 훈련처장 및 각 학문계열을 대표하는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통리한다.

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5 조 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 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간사는 교학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7조(학부(과)별 교육과정개선위원회)

① 학부(과) 교육과정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·심의하기 위해서는 학부(과)별 교육과정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학부(과)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학부(과)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2. 위원장은 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관장한다.

③ 학부(과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한다.

1. 학부(과) 교육과정의 편성, 개편, 운영에 관한 사항

2. 본교 각 이수구분별 졸업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

3. 기타 학부(과) 교육과정개선과 관련된 사항

④ 학부(과)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 (2003. 5. 1. 규칙 제39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7. 31. 규칙 제480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3. 28 규칙 제59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